

IV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대표전화 : 1544-3089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 주소 : (우)072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8층 - Tel : 02)6711-2963, 2964, 2965 / Fax : 02)6711-2969 - 관할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 주소 : (우)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 Tel : 051)520-0570, 0575(1부) / Fax : 051)520-0579 - Tel : 051)520-0670, 0676(2부) / Fax : 051)520-0579 - 관할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 주소 : (우)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 Tel : 062)949-8783, 8782 / Fax : 062)949-8768 - 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역본부	- 주소 : (우)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Tel : 032)510-0525, 0526(1부) / Fax : 032)578-9202 - Tel : 032)510-0565, 0566(2부) / Fax : 032)579-8192 - 관할지역 1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의 한강이북지역(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2부)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도 여주군,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성남시
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 주소 : (우)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층 - Tel : 053)609-0564, 0560 / Fax : 053)421-8627 - 관할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 주소 : (우)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3층 - Tel : 042)620-5643, 5644 / Fax : 042)632-3619 - 관할지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 신청인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하는 지역본부에 신청 가능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이동식크레인 ·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제도 시행 안내



I 안전검사



1. 안전검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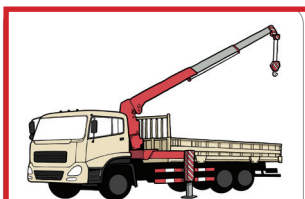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적용 범위

①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 하중 2톤 이상**인 것(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대 상



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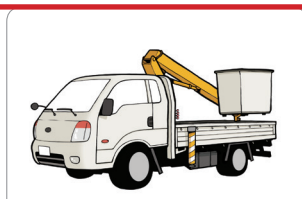
비대상

②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대 상



대 상



비대상

3. 안전검사 기관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전국 6개소)

4. 안전검사 신청절차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로 제출 ※ 신청인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 있는 경우 원하는 인근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신청 가능
민원접수 (즉시)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민원접수 담당부서를 통해 민원접수
가상계좌 발송 및 수수료 입금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안전검사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를 신청인의 전화번호문자메세지(SMS)로 발송 - 신청인 - 전화번호문자메세지(SMS)로 발송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안전검사일 확정 (7일 이내)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지
안전검사 실시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 신청인이 요청한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 지정검사장으로 차량이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가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장소(25×15m)를 확보한 후 출장검사 요청 가능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5. 안전검사 실시 주기

① 2016년 8월 18일 이전 등록 차량

- 2017년 11월 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②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차량

- 자동차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검사 수수료

(단위: 원)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이동식 크레인	59,000
고소작업대	54,000

※ 검사 수수료는 관련 고시(산업안전보건 업무수수료)로 공고 예정

7. 전국 검사장 현황

① 전용 검사장

번호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전용 검사장소	주소
1	중부지역본부	중부안전체험교육장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2	대구지역본부	경북안전체험교육장	경북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3	대전지역본부	충청안전체험교육장	충남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714-77

※ 전용 검사장으로 차량 이동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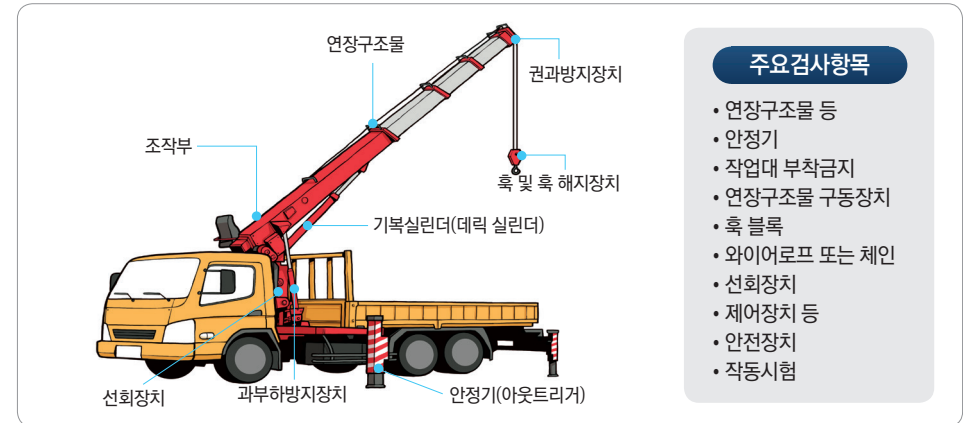
② 지정 검사장

번호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지정 검사장소	주소
1	부산지역본부	(주)노바스	경남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707-94
2	광주지역본부	(주)호룡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공단 2길 73
3		(주)진우에스엠씨	전북 익산시 춘포면 석암로 353
4		(주)동해기계항공 (광주호남 A/S센터)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891
5		(주)동해기계항공 (제주 A/S센터)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690
6	중부지역본부	(주)동해기계항공 (서울경기북부 A/S센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779번길 14
7		(주)동해기계항공 (서울경기 A/S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107
8	대전지역본부	(주)삼양에이치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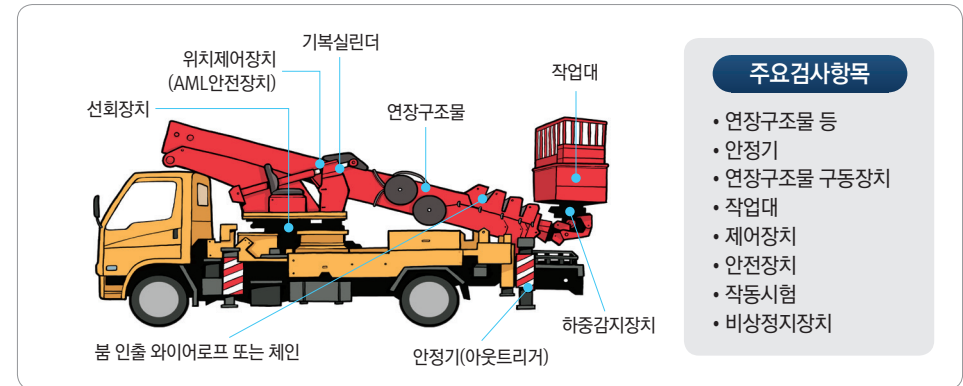
※ 전용 검사장 및 지정 검사장으로 차량이동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께서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장소(25×15m)를 확보한 후 출장 검사 요청 가능

8. 주요 검사항목

① 이동식크레인



② 고소작업대



9.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안전검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개인)

10. 과태료

구 분	과태료	관련근거	비고
안전검사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사용중지 명령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음

II

안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검사 희망일		
유해·위험기계명	형식(규격)	용량	전 검사일	검사합격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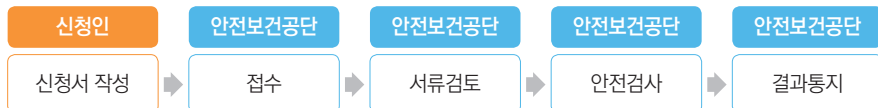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	----	-----------------------------------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III

안전검사 대상품 안내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이동식크레인 포함)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식집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 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cm ²)을 초과한 경우 •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용압력이 2kgf/cm ² 미만인 경우도 제외
곤돌라	•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국소배기장치	•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제외
원심기	•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가.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 이하인 것 나.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다.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라.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사용되는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다.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라.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마.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바. 가열로 또는 가열기 • 다만,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경우. 다만,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형체결력 294 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테일 리프트(tail lift) 나.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다.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